

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(재위탁) 보고의 건

의안 번호	2237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2. 28.

제 출 자 : 달성군청



1. 보고이유

-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심의·의결 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.

2. 근거법령

- 가. 영유아보육법 제14조, 제24조제3항
- 나.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정 제9조

3. 운영현황

- 가. 위 치 : 달성군 옥포읍 강림3길 42
- 나. 위탁기간 : 2020. 3. 1. ~ 2023. 2. 28.
- 다. 위 탁 비 : 연 327백만 원
- 라. 수 탁 자 : 조미혜 원장
- 마. 교 직 원 : 10명(원장, 교사 7명, 조리사, 사무원)
- 바. 정 현 원 : 정원 49명, 현원 47명(직장 24명, 민간 23명)

4. 재위탁 경위

- 가. 2022. 11. 18. : 재위탁 신청서 접수
- 나. 2022. 12. 1. : 직장어린이집 운영위탁심의위원회 심의
 - 결과 : 운영평가 점수를 평균 80점 이상 득하여 재위탁 의결
 - 재위탁 기간 : 2023. 3. 1. ~ 2026. 2. 28.

□ 영유아보육법

제14조(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

제9조(재계약)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,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정

제6조(위탁기간)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제15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실적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.

제9조(재계약) ① 제6조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전항에 따른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위탁심의위원회에 위탁운영에 대한 관리·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